

의안번호	제 387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9월 일 (제314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8월 31일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 2012년 8월 31일

발 의 자 : 이수완 · 정 현 · 황규철 · 권기수 ·
김도경 · 유완백 · 윤성욱 의원(7명)

1. 제안 이유

-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시상 시기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상패를 수여하고, 시상금 수여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상) 도지사는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6조(생 략)</p> <p>제7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p> <p>② 제1항의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p>	<p>제1조 ~ 제6조(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상) 도지사는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p>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중간 생략 >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이하 생략 >